

『구미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수도관리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부담금 부과·징수, 정산, 과오납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9조)

라. 공사시행자,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2조)

마. 이 조례의 제정에 따라 기존의 「구미시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 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함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합 의 : 기획예산과,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

5. 검토의견

- 본 「구미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다량의 수돗물을 필요로 하는 개발사업 등으로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켜 원인자부담금을 현실화하여 특별회계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